

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(보고)서

☐ 현지법인 내용변경 ☐ 기타

외국환은행장 귀하 20 . . .

신고(보고)인 상 호 또는 성 명 (인)
사업자(주민) 번호
소재지 또는 주 소 전화
(담당자 직성명 :)

변경대상 현지법인명 :
현지법인 대상신고번호 : 신고일자 : 신고금액 :

아래와 같이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을 신고(보고)합니다.

1. 변 경 사 항	변경전	변경후
2. 변 경 사 유 (요 약)		

붙임서류 : 1. 당초 신고(보고)서 사본
2. 기타 내용변경 신고(보고)시 필요한 서류

신 고 번 호	
신 고 일 자	20 . . .

신고기관 : (인)



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(보고) 관련 유의사항

1. 변경사유가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이내에 지정은행에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보고를 하여야 함

※ 내용변경 사유 예시

가. 대부투자의 기한, 상환방법, 금리 등 변경

나. 투자자의 상호 · 대표자 · 소재지, 현지법인명 · 현지법인의 소재지

다. 현지의 예상치 못한 사정이나 경영상 급박한 사정 등으로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사전신고 후 변경하는 것이 적절
치 않은 경우로서 추가 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

라. 대부투자신고후 1년이내 자금 회수

2. 유상감자, 비거주자에게 지분 일부 양도 등으로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회수 즉시 보고하여야 함

3. 증액투자는 내용변경보고대상이 아닌 신규신고 대상임

4. 신고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내용변경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,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

